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베트남")와 대한민국 정부("한국")(이하 총칭하여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한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관계와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더 넓어지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경제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국 간의 경제 발전의 상이한 수준을 인식하고,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시키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기본협정에 따르는 그 밖의 관련 협정상의 약속에 기초하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1.2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의 상품무역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

나.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

다. 양 당사국의 경제에서의 경쟁, 특히 양 당사국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라. 지식재산권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 그리고

마. 이 협정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 증진을 위한 틀을 수립하는 것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서비스·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양 당사국 간의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서로 즉시 협의한다.

제1.4조
의무의 범위

이 협정에 따른 의무 및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 정부 또는 당국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에 의한 준수를 보장한다.

제1.5조
일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이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동 기본협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을 말한다.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 및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가.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법 및 규정이란 관세·부과금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금지·제한 및 각 당사국 관세영역의 경계를 넘는 통제된 물품의 이동에 대한 그 밖의 유사한 통제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 수출, 통과 또는 환적에 관하여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운영하고 집행하는 법과 규정을 말한다.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로서 주해 및 보충적 규정을 포함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당시 발효 중이며 수시로 개정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에 포함된 모든 법률 주석에 정의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표기방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17.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법인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법적 실체를 말한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헌법과 개정되는 바에 따른 「베트남 국적에 관한 법」 상 의미에서 베트남의 시민인 모든 인,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국적법」 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원산지 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제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베트남의 경우, 그 국내 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 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1다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WTO)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내국민 대우

제 2.2 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2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3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이다.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3.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허표를 개정하기 원한다면 언제라도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 절차가 완료된 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외교공한을 통하여 신속하게 통보한다. 그와 같은 개정은 외교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한다. 그에 규정된 일방적 가속화에 따라 그 당사국이 부여한 어떠한 양허도 철회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이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이라 한다)을 인하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 2.4 조
동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이는 한쪽 당사국이 다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가.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인하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관세를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 또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수준 중 더 낮은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3절
특별 제도

제2.5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이 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아니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로 한쪽 당사국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및 광고물[1],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세관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처음에 정하여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1] 정의 및 내용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규제할 수 있다.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7.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하여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이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할 증거를 수입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8. 제8장(서비스무역) 및 제9장(투자)을 조건으로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로를 통하여 자국 영역을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2]

나. 어떠한 당사국도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 어떠한 당사국도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어떠한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반하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고속도로 및 철로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당사국이 통관 항구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가 나가는 것이 가능한 항구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2.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2.7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4절
비관세조치

제2.8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의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통합된 1994년도 GATT 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 협정 제8.1조에 의하여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3. 당사국이 자국의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아니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

4. 당사국이 자국의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격설정, 마케팅 또는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항은 당사국이 제5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당국과 그 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7. 제5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2.9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3]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러하게 한다.

제2.10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3] 이 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상의 자국의 의무와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제2.11조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2.12조
관세율할당 운영 및 이행

1. 부록 2-가-1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수립한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3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그리고 수입허가협정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

2.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운영 조치 및 이행이 일관되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차별을 유발하기 위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관세율할당 체계를 통한 수입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도록 보장한다.

제5절
일반 및 제도 규정

제2.13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조치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하여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를 포함하는 1994년도 GATT에 따라 그 당사국은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의 채택에 대하여,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즉시 협의한다.

제2.14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

 나.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대한 장벽을 다루고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다. 이 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다음 사항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

 1)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그러한 개정과 부속서 2-가, 또는

 2) 부속서 2-가와 국가상품분류체계

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마.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호부터 라호까지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장을 제공하는 것

제6절
정의

제2.15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소비된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또는

나.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이 수출될 것

나.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이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라.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외환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그러나 이는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선택 상품으로서, 소책자, 팸플릿, 전단지, 거래 카탈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1"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완전히 철폐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아.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2.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 제2절상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제2절상의 그 연도에 규정된 관세율에 따른다.

3.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다음을 반영한다.

가. 제1절에 관해서는, 2012년 1월 1일에 유효한 각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과 2012년 1월 1일에 유효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상의 자국의 특혜 관세율 중 낮은 것, 그리고

나. 제2절에 관해서는, 2015년 1월 1일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특혜 관세율

4. 상품에 대한 각 관세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퍼센트 포인트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소한, 한국의 경우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을 위하여, **이행 1년차**란 제17.8조(발효)에서 규정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7.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을 위하여,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 제1항의 나호, 다호, 라호, 마호, 바호 또는 사호에 따른 이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상 동일 상품에 대한 관세와 다른 경우, 더 낮은 관세가 이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적용된다.

9. 양 당사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전환이 이 부속서상 관세양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보장한다.

일반 주해

베트남 관세양허표

1. 베트남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VN"라 한다)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V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V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VN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V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양허단계: 부속서 2-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S-2, S-3, A 및 B-2를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S-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S-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7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17년 1월 1일까지 20퍼센트로 인하되고,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그 인하된 세율이 유지되고, 2021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50퍼센트 이하로 인하한다. 그리고

라. 단계별 양허유형 "B-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 최혜국 실행 관세율[4]의 20퍼센트 이상만큼 인하한다.[5]

[4]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최혜국 실행 관세율"이란 2005년 1월 1일 기준 베트남의 적용 세율을 말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인하된 관세율이 기준관세율보다 높은 경우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한국 관세양허표

1. 한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K"라 한다)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양허단계: 부속서 2-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S-1, B-1, C 및 R을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S-1"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6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B-1"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6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일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 최혜국 실행 관세율[6]의 20퍼센트 이상만큼 인하한다.[7]

다. 단계별 양허유형 "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6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 최혜국 실행 관세율의 50퍼센트 이상만큼 인하한다[8]. 그리고

라. 단계별 양허유형 "R"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6]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 최혜국 실행 관세율" 이란 2005년 1월 1일 기준 한국의 적용 세율을 말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인하된 관세율이 기준관세율보다 높은 경우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인하된 관세율이 기준관세율보다 높은 경우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규정된 약속의 이행에 대한 한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록 2-가-1

한국의 관세율 할당 운영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베트남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 대신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베트남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베트남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10,000
2	11,000
3	12,100
4	13,310
5	14,641
6	15,000

이행 6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이행 6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의 제1항 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그리고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306161090, 0306169090, 0306171090, 0306179090, 0306261000, 0306271000 및 1605219000.

제 3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고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3.2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상품이 제3.3조 또는 제3.4조 또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그 상품,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2. 제3.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국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2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제1항가호의 의미 내에서,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성 제품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라.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으로 획득된 상품, 또는 그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 또는 양식으로 획득된 상품

마. 그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그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로 상품과 그 밖의 해양 상품,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잡힌 그 밖의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국제법[1]상 그러한 수역, 해저, 그리고 해저 하부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할 권리[2]가 있어야 한다.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바호에 언급된 상품만으로 생산되고/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아.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한다.

자.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그리고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이 호의 "국제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을 지칭한다.

[2] 양 당사국은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이 호의 "권리"는 당사국과 그 연안국의 정부 간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 받은 민간 기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그 밖의 약정에서 비롯되는 연안국의 어로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을 양해한다.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는 상품

1. 제3.1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 한다)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 중 한가지이다.[3]

가. 직접법/집적법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다음의 원산지재료비용, 노무비, 간접비, 이윤과 그 밖의 비용의 가치를 포함한다.

1) 재료비용은 그 상품의 생산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가치이다.

[3] 양 당사국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2) 노무비는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을 포함한다.

3) 간접비는 총 간접비용이다. 그리고,

4) 그 밖의 비용은 수출을 위하여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 수단에 상품을 적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운송비용, 보관 및 창고, 항만, 중개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한다.

또는

나. 간접법/공제법

$$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또는

2)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이 된,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제1항과 부속서 3-가에 규정된 관련 품목별원산지규정의 목적상, 사용된 재료가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4.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3.4조
품목별원산지규정

제3.1조의 목적상,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은 그 상품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3.5조
특정 상품의 취급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이 한반도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에서,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생산 가공 또는 공정이 이루어져 그 이후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부속서 3-나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6조
누적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4]

제3.7조
불인정 공정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후 그 시점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효중인 경제통합 협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데 합의한다.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이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단순한[5]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마.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공정

아. 단순한[5]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6]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5]"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는 HS 0801.32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7]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또는

너. 동물의 도살[8]

2.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때, 제1항에 언급된 것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최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제3.8조
직접 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통과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7] "단순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을 말한다.

[8]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의 모든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제3.10조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1. 가. 상품이 제3.3조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의 가치는, 그 포장 및 포장재가 그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된다.

나. 상품이 제3.3조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 외의 기준의 대상이 된다면,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는, 그 포장된 상품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제3.3조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3.11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 또는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 또는 그 밖의 안내서는 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상품과 함께 관세가 징수되어야 한다.

제3.12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아니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공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3.13조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1.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인지 여부는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재고관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사용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2.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이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된다.

제2절
원산지 절차

제3.14조
원산지 증명서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서식의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은, 제3.17조에 명시된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서 없이도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원산지 증명서는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의 책임 하에서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으로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가. A4 크기의 용지에 부속서 3-다의 첨부1 서식으로 인쇄된다. 다수의 품목을 신고할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3-다의 첨부2 서식을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되는 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한장의 원본과 두장의 사본으로 구성된다. 원본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달한다. 제2사본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이 보관한다. 제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관한다.

다. 영어로 작성되며, 하나의 탁송물에 있는 하나 이상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라.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인쇄된다.

마. 수출되는 탁송물에 해당하는 그 상품의 품목명, 수량 및 중량을 포함한다. 그리고,

바. 발급 당국에 의하여 부여 받은 고유한 일련의 참조번호를 포함한다.

4.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9] 이내에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행될 수 있다.

5.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상품의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은, 국내 법령에 따른 그러한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3근무일"은 선적일 자체를 포함한다.

6.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발급 당국에 발급 당국이 보관 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의 12번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다.

7. 원산지 증명서상의 삭제와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변경 시에는 잘못된 부분은 줄을 그어 지우고 필요한 추가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한 변경은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에 의하여 승인 되고 발급 당국에 의하여 인증 받는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백은 차후의 추가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을 그어 지운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발급 당국은 본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한다.

제3.15조
발급 당국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당국 이름과 인장의 최신 등록부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당국의 이름과 인발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3. 등록부에 대한 변경은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고 통보일부터 15일 후 또는 그러한 통보에 명시된 더 늦은 날에 발효된다.

4. 각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상품의 품목명, 수량 및 중량이, 명시된 대로, 수출되는 탁송물과 일치할 것, 그리고,

 나.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 당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한 일련의 참조번호를 포함할 것

제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입서류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할 것

나. 제2항가호에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제3.14조에 기술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그리고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요청시, 원산지 증명서, 송장,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과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3. 원산지 증명서는 그 발급일 후 1년 동안 유효하다.

4.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입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나.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서류

제3.17조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당사국은 수입의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18조
기록유지요건

1. 검증 과정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을 위한 증빙 기록을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한다.

3.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및 그러한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발급 당국에 의하여 발급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된다.

4.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에 의하여 제공되고 적절한 정부 당국에 의하여 인증된다.

5. 양 당사국 간 교환된 모든 정보는 제4.6조(비밀유지)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고 원산지 증명서의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제3.19조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의 처리

1. 상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없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무효화되지는 아니한다.

2.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원산지 증명서상의 사소한 오류를 발견할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그 원산지 증명서가 수용될 수 없도록 한 오류를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3. 수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 후 30일 이내에 제3.14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적절한 수정본을 제출하거나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발급된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

4. 수입자가 제3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수정본이나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3.21조에 따라 검증의 수행을 진행할 수 있다.

5.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상에 다수의 품목이 신고된 경우, 열거된 품목들 중 하나에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 그 원산지 증명서에 열거된 나머지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및 통관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되지 아니 한다.

제3.20조
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은 송장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검증

1.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10]에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사후 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 검증에 대한 수입

[10] 한국의 경우, 이 조에 따른 원산지 검증의 목적상 "발급 당국"은 한국의 관세법과 규정에 따른 관세 당국을 지칭한다.

당사국의 요청은 관련 원산지 증명서를 수반하고 그 이유와 해당 원산지 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추가 정보를 명시한다.

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은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요청 당국에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하여 그 요청의 접수 확인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다. 사후 검증에 대한 요청을 접수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신속하게 그 요청에 응답하고 그 요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수입 당사국은 사후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사기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마.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검증 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후 검증의 전 과정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10개월 이내에 완료된다. 사후 검증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제1항라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 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이 사후 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출 당사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검증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가. 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2)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 당국

3)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관세 당국, 그리고

4) 검증방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

나. 제4항가호에서 언급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 당국의 이름

2)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이름

3) 제안된 검증방문 날짜

4) 검증대상 상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제안된 검증방문의 범위, 그리고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함

다. 수입당사국은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서면동의를 받는다.

라. 제4항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검증방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원산지 증명서에서 언급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마. 통보를 받은 발급 당국은 제안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연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검증방문은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된다.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및 관련 발급 당국에 그러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한다.

6. 정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제5항에 언급된 서면 결정서에 따라 복원된다.

7.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상품의 자격에 대한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의견서나 추가 정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가 관련 발급 당국에 통지된다.

8. 최초의 검증방문이 수행된 첫날부터 최대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실제방문과 그러한 검증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제5항의 결정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가 수행되고, 그 결과는 관련 발급 당국에 통보된다. 검증절차가 수행되는 동안, 제1항마호가 적용된다.

제3.22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3조
직접 운송의 이행

제3.8조 이행의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 증명서

다.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라. 제3.8조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제3.24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3.8조와 제3.2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25조
이행

양 당사국은 인증수출자제도에 있어서 국내 이행 절차의 발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후 원산지 증명서 외의 원산지증명방식을 검토하는데 합의한다.

제3절
정의

제3.26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연체동물·갑각류·그 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 및 수생 식물을 포함한 수생 생물을 알·치어·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한다. 평가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FOB)이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를 말한다. 평가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하여서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발급 당국이란 이 장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재료란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및 하위 조립품을 포함한다.

비원산지 상품이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와는 다르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인을 말한다.

품목별원산지규정이란 재료가 세번의 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명시하는 규정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두주

1. 이 부속서의 품목별원산지규정은 2012 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이 부속서의 품목명과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하여 수립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법적 텍스트에 규정된 품목명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후자에 규정된 품목명이 우선한다.

2. 특정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원산지 규정 또는 특정 원산지 규정들은 그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3. 소호가 품목별원산지규정상 선택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그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품목별원산지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면,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도록 요구된다.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5. 품목별원산지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규정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세번에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은 해석한다.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 단위를 말한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 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 단위를 말한다.

7. 이 부속서 제 5 열의 목적상,

2 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 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 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 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XX 퍼센트 이상일 것(RVC(XX))이란 제 3.3 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XX 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그리고

완전생산기준(WO)이란 제 3.2 조에 따라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될 것을 말한다.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1.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하여 재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제3.7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품으로 재수입되고, 제7항에 언급된 목록과 이후의 개정에 반영된 제3.5조에 언급된 "특정 물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비원산지 투입의 총 가치[11]는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관련 규정은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2. 제3.5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이 장의 제2절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12]에 의하여 발급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그 상품에 제3.5조가 적용됨을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한다.

다.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 제2절의 관련 조는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라. 한국은 이 장 제2절의 관련 조에 따라 베트남 관세 당국이 제3.5조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11]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란 운송비를 포함하여 베트남과 한국의 역외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비용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12] 한국의 경우, 이 부속서의 목적상,"발급 당국"은 한국의 관세 당국을 말한다.

3.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가. 한쪽 당사국이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양과 그러한 조건 하에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의 증가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상품에 대한 제3.5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3.5조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한쪽 당사국은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2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제안된 정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다. 가호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정지 조치를 한 당사국이 그 정지가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어야 한다.

라.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가호에 따른 제3.5조의 적용의 정지는 다른 쪽 당사국에 2개월 사전통보 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지가 발효되기 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당사국이 가호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3.5조의 적용을 다음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1)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

2) 사전 협의에 대한 의무가 없다.

3) 정지의 기간 또는 빈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4. 연례 검토

가.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서 제3.5조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 수출 당사국은 전년도 일년 동안 수입 당사국에 대한 제7항에 나열된 각 상품의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3.5조의 운영에 대한 간략한 사실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유를 포함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한다.

나. 공동위원회는 제3.5조의 이행과 운영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 정보를 수출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다. 공동위원회는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5. 분쟁해결

이 부속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제15장(분쟁해결)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제7.1조(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를 포함하여 이 협정하의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상품 목록

다음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이다. 한쪽 당사국은 이 항에 언급된 목록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채택된다.

번호	소호 (2012)	품목명 (소호)
1	121221	식용
2	321310	세트상의 회구류
3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로 알려진 조제품[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또는 판 모양·말굽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4	35061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391740	연결구류
6	39231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7	3923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39235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9	392690	기타
10	401699	기타
11	420229	기타
12	48194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13	520839	그 밖의 직물
14	55093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15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16	580421	인조섬유로 만든 것
17	5810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6102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9	6102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0	610711	면으로 만든 것
21	610791	면으로 만든 것
22	610821	면으로 만든 것
23	61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4	610891	면으로 만든 것
25	610910	면으로 만든 것
26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7	611011	양모로 만든 것
28	611120	면으로 만든 것
29	611130	합성섬유의 것
30	611522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1	6115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2	611594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번호	소호 (2012)	품목명 (소호)
33	611595	면으로 만든 것
34	611596	합성섬유로 만든 것
35	6115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6	6201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37	6201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8	6201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39	6202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0	6202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41	62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42	6203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43	62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4	6203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5	620333	합성섬유의 것
46	6203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7	620342	면으로 만든 것
48	62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49	6204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50	6204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51	6204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52	620462	면으로 만든 것
53	62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54	620520	면으로 만든 것
55	6205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	6206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57	6206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8	620711	면으로 만든 것
59	6207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0	6207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	6208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	621143	인조섬유로 만든 것
63	621600	장갑류
64	630231	면으로 만든 것
65	630493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6	630532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7	630533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8	6306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69	630790	기타
70	650700	모자용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 및 턱끈

번호	소호 (2012)	품목명 (소호)
71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72	691490	기타
73	732393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74	761699	기타
75	841330	연료 · 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76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77	848490	기타
78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9	8503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0	85124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및 제무기(demister)
81	851290	부분품
82	851610	전기식의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83	851660	그 밖의 오븐, 쿠커 · 조리판 · 보일링링 · 그릴러 및 로스터
84	851690	부분품
85	851770	부분품
86	852990	기타
87	853669	기타
88	853670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89	853890	기타
90	853990	부분품
91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92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93	870892	소음기(머플러) 및 배기관, 그 부분품
94	870894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과 운전박스, 그 부분품
95	870899	기타
96	940510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또는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
97	9405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8	940599	기타
99	96082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100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첨부 1

원본(제2사본/제3사본)

1. 송하인(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	참조번호 베트남-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서식 VK 발행국 _____ (국가) 뒷면 참조
2. 수하인(수하인의 이름, 주소, 국가)	
3. 운송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항일 선명/편명 적출항	4. 담당자란 ☐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관세대우 ☐ 특혜관세대우 비부여 (사유를 기재합니다) 수입국의 서명권자의 서명

5. 품목번호	6. 포장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기재 및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HS번호를 포함합니다)	8. 원산지 기준(뒷면의 주해를 참조합니다)	9.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및 가격(RVC기준이 사용된 경우에만 FOB를 기재합니다)	10. 송장 번호 및 일자

11.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상기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

(국가)

그리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에 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

(수입국)

.....

장소 및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12. 증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

.....

장소 및 일자, 서명 및 증명 기관의 관인

13. 비고

뒷면 주해

1. 베트남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VK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

2. 조건: VK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 상기에 명시된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1) 목적지 국가에서 양허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명에 해당된다.

2) VKFTA의 제3.8조(직접운송)에 따라 운송 조건을 준수한다.

3) VKFTA의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한다.

3.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이 서식의 제8란에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서식 제11란에 이름이 기재된 수출 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 환경	제8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품목별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CTC"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RVC": 예, "RVC 45퍼센트"
- RVC + 세번변경	-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결합 규정: 예, "CTH + RVC 40퍼센트"
- 특정 공정	- "특정 공정"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PE"
라. 제3.5조를 충족하는 상품	"제3.5조"

4. 각 품목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탁송물의 모든 상품은 각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다른 크기의 유사한 품목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 특히 관련이 있다.

5. 상품명: 상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상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6. 본선인도가격 (FOB):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RVC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9란에 FOB가격을 반영한다.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수입 당사국의 번호를 말한다.

8. 수출자: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

9. 담당자 기재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여부를 제4란의 해당 상자에 (√) 표시한다.

10. 제13란의 비고:

1) 송장이 비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는 경우, "비당사국 송장"이라고 기록되어야 할 것이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이름과 국가 같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필요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이 기록된다.

첨부 2

원본(제2사본/제3사본)

(추가면)

참조번호

5. 품목 번호	6. 포장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및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HS 번호를 포함합니다)	8. 원산지 기준 (뒷면 주해를 참조합니다)	9.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및 가격(RVC기준이 사용된 때에만 FOB를 기재합니다)	10. 송장 번호 및 일자

11.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상기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

(국가)

그리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에 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

(수입국)

.....

장소 및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12. 증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

.....

장소 및 일자, 서명 및 증명기관의 관인

13. 비고

제 4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영어로, 자국의 관세 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질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사전에 공표하며,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4.2조
상품의 반출

1. 양자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자국의 관세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상품이 도착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상품의 도착 전 또는 도착 즉시 관세, 조세 및 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한 최종 결정 이전에 수입자가 상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다만, 그 밖의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제4.3조
자동화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가. 세관 이용자가 전자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나.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다. 국제무역 데이터의 양자 간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시스템과 호환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의 관세데이터모델과 WCO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른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자료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4.4조
위험관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검사 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과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1]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조세 및 수수료의 지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담보·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
협력

가능한 한도 내에서,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며, 전산화 시스템에 관한 세관 기술과 절차들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 및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한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교환한다.

제4.6조
비밀유지

1.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모든 비밀유지의 위반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행정 절차 또는 후속 항소 절차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될 수 있는 한도 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정부의 명시적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아니 한다.

제4.7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특송화물에 대하여 적절한 세관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그 무게 또는 과세가격과 무관하게,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규정한다.

나.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특송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일정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나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2]

제4.8조
재심 및 불복청구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의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행정적 재심[3],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당사국이 제4.6조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4.9조
벌칙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국가 및 특혜관세 대우의 신청을 규율하는 것을 포함한 자국의 관세법, 규정 및 절차적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한 벌칙의 부과를 허용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이 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화물 운송장이나 다른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입제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한국의 경우, 이 호에 따른 행정적 재심은 대한민국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포함할 수 있다.

제4.10조
사전심사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다음의 사안에 대한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서면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4]

가. 품목분류

나.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자국 관세 당국을 통하여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서를 발급할 때, 그 당사국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서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3.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전심사서가 발급된 날, 또는 그 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서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4. 발급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가. 그 심사가 사실 또는 법률의 오류에 근거하였을 경우(사람에 의한 오류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포함)

나.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할 경우

다. 이 협정과 일치하는 자국의 국내 법에 변경이 있을 경우, 또는

라. 그 심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을 경우

5. 발급 당사국은 심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만 사전심사 결과를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행정적 재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7.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의 비밀유지 요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 결과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제4.11조
협의

1. 각 관세 당국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대 관세 당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그러한 협의가 모든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실패할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4.12조에 언급된 관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12조
관세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 구성된 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한다.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이 장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모니터링과 이행

나.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적인 해석을 위한 통일된 지침 수립

다. HS 전환에 기초한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의 개정

라. 필요시,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이행 과정에서 품목분류, 관세평가, 역내부가가치의 계산과 관련된 사안 및 양 당사국 간의 무역 원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그 밖의 관세사안에 대한 해결책 모색, 그리고

마.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개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합의를 도출할 것

4. 위원회는 매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양국 간 교대로 회합한다.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1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

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양자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기술협력과 협의를 강화하는 것

제5.2조
적용범위와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양자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채택 또는 시행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가에 포함된 정의가 적용된다.

제5.3조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기술협력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신뢰를 획득하며, 그리고 양자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의 기술협력을 위한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을 적절히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르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국제 표준 및 국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경험교환 및 협력 강화

나. 특히 위험 분석 방법론, 질병 또는 병해충 관리 방법, 그리고 실험실 시험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

다. 동물 질병과 식물 병해충 관리에 대한 양 당사국의 역량과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의 관련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개발

라.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대한 동물 질병이나 식품안전 관련 사고의 발생 및 관련된 국내 규정과 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교환

마. 양 당사국의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문의처 간의 협력 및 경험 교환 강화

바. 동물 질병, 식물 병해충 및 식품안전을 포함한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수행 및 그 연구 결과의 공유, 그리고

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제5.5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점검

나.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포럼 제공

다.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와 검토 수행, 그리고 필요시,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의하여 합의된 조건을 기초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술작업반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

라.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 절차에 대하여 상호 이해 증진

마.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노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의 기술협력 확인, 논의 및 검토, 그리고

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그 밖의 기능 수행

3.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에 의한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최소한 연 1회 또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결정된 때에 직접 회합한다. 회의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5. 양자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양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상호 관심 사안을 다룰 목적으로, 그 요청일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원회에 의하여 합의된 조건을 기초로 협의를 개시한다.

6.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7. 위원회 회의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제공된 정보가 최신임을 보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접촉선을 지정한다.

가. 베트남의 경우, 농업농촌개발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들 각자의 승계기관

제5.6조
분쟁해결

제15장(분쟁해결)의 규정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6.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이행의 개선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증대하고 원활히 하는 것,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다. 양 당사국 간 공동협력의 증진

제6.2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6.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1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4조
국제표준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제5.4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TBT위원회"라 한다)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1]을 적용한다.

제6.5조
기술규정

1.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제6.6조
적합성 평가절차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1] G/TBT/1/Rev.11의 제1부에 대한 부속서 2와 그 후 개정사항

표준과의 적합성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의 효율을 높이고, 중복을 방지하며, 비용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상황 및 관련되는 특정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한 합의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또는 지명 절차의 채택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인정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3.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의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2항가호부터 바호까지의 접근법 및 그 밖의 적절한 접근법에 대한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양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4.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5.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추천하고 자국의 영역에 주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승인 또는 달리 인지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6. 양 당사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통신장비 적합성 평가를 위한 상호인정 협정」과 관련하여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7조
투명성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제2.9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보되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문서 전체에 대한 온라인 연결 또는 그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2.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공중 및 다른 쪽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한쪽 당사국은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간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규정안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양 당사국은 언제든지 가능한 경우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6.8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나. 투명성, 우수 규제 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조화,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의 사용과 같은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

다. 이 장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발생하는 도량형 요구의 효과적이고 충분한 준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지원,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사용

3.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추가 협력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한 특정 분야, 예를 들면 건축자재, 화장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한다.

제6.9조
정보교환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일반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수용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10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있어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원활히 하는 것

나.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을 점검하는 것

다.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라. 제6.8조에 규정된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공동 협력을 조율하고 제고하는 것

마.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제안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고된 협력을 위하여 상호 합의된 우선 순위 분야를 확인하는 것

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아.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의 해결을 목적으로 협의하는 것

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

차.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분야를

위한 임시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그리고

타.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것

3. 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제2항아호에 따른 협의를 이용한 경우,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15.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구성한다.

5. 위원회는 다음의 기관이 조정한다.

가. 베트남의 경우, 과학기술부의 표준계량품질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의 조정을 담당하는 접촉선을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이 지정된 접촉선의 이름과 전화, 팩시밀리, 전자메일 및 그 밖의 관련 세부사항을 포함한 그 조직 내의 관련 공무원의 연락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의 변경 또는 관련 공무원의 정보에 대한 수정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6.11조
정의

1.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1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7장
무역구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1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수입 당사국 영역 내에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 형태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2) 제2.3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제7.2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그 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다호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가호 및 제4.2조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가호 및 제4.2조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6.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7.3조
잠정 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 공고를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조치의 적용 후 협의를 개시한다.

4.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5. 그 당사국은 제7.2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2조제5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7.4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모든 보상은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 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5.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적용되고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동안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제7.5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제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7.6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국 간 반덤핑 또는 상계 조치 사안에 있어 다음의 관행을 준수한다.

가. 반덤핑협정 제2.4조제2항상의 비교 기준과 관계 없이, 반덤핑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덤핑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 반덤핑협정 제9.1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최소 관세'가 적절할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조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의 질의서에 대한 적시의 대답을 요구한다. 조사 당사국이 마감시한 전에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정보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또는 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명확화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 당사국은 누락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관한 정보의 명확화를 요청한다. 이 절차는 조사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상의 마감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7.7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15일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7.8조
약속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가격에 대한 약속을 자국의 당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에 관한 서면 정보를, 실행 가능한 경우 그러한 약속을 제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한다.

2. 반덤핑 조사에 있어, 당사국의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국내 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국내 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7.9조
재심에 의한 종료 이후의 조사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면서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 개시 전 검토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7.10조
누적적 평가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제3절
무역구제위원회

제7.11조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무역구제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나.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다. 무역구제에 관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당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라. 양 당사국이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마. 양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1)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규범 협상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2) "이용가능한 사실" 의 적용 및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 있어서의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사안에 관하여 협력하는 것

3.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제4절
정의

제7.1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 후 10년 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을 말한다.

제8장
서비스무역

제8.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진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그리고

 다. 상업적 주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에 의한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 그리고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나.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부여방식과 관계없이 항공 운항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운항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다. 해상운송서비스의 연안운송

라. 제8.16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또는 계속적 수령에 부과되는 조건, 또는

마.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 내로의 입국 또는 자국 내에서의 일시적인 체류를 규제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1]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는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2조
내국민 대우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1]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의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3조
최혜국 대우

1. 이 협정의 발효 후에,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동종의 상황에서 그 비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비당사국과의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이 협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을 하는 당사국과 혜택의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대우는 다음과 같은 협정 상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된 어떠한 특혜대우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기존의 비당사국과의 양자, 지역 또는 국제 협정, 또는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모든 양자 또는 복수국 간 협정

제8.4조
시장접근

1. 제8.20조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의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2] 당사국이 제8.20조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의 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로서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서비스 자체의 중요한 일부인 경우에, 그 당사국은 이에 의하여 그러한 자본의 이동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당사국이 제8.20조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의 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이에 의하여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3]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8.5조
추가적 약속

당사국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8.6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3] 이 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요건 및 자격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그리고

마.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8.2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8.2조와 관련된 란에 기재하고, 제8.4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8.4조와 관련된 란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이 장에 부속되어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7조
투명성

제14장(투명성)에 더하여,

가.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나. 당사국이 제14.1조(공표)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사전공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의 대상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둔다.

제8.8조
국내 규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그러한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수립한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그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실제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가호의 규정은 자국의 헌법구조나 법체계의 성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개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마련한다. 그러한 규율은 그러한 요건들이 특히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5. 가.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4항에 따라 마련되는 각 분야별 규율이 발효될 때까지 당사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 그리고

2) 그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당사국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나. 당사국이 가호의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련 국제기구[4]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6.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충분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8.9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각국의 표준 또는 기준을 충족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국 간 또는 관련 권한 있는 기관 간의 협정 또는 약정에 근거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4]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적어도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 기구를 지칭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경험·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3.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자국의 기존 인정 조치를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며,

나.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교섭이 실질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이 그 교섭에의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사전에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교섭의 개시를 공동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다. 새로운 인정 조치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인정 조치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공동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공통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국제공통표준의 수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제8.10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 장에 따른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는, 그리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제휴 법인을 통하여 경쟁을 할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그러한 약속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는 다른 쪽 당사국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는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나. 자국의 영역 내에서 그러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는 경우

제8.11조
영업 관행

1. 양 당사국은 제8.10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 관행 외의 서비스 공급자의 일정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하 "요청당사국"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하 "피요청당사국"이라 한다)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피요청당사국은 또한 자국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요청당사국에 의한 해당 정보의 비밀성 보호와 관련된 합의를 조건으로, 그 밖의 입수 가능한 정보도 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제8.12조

지급 및 송금[5]

1. 제8.13조에 상정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급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사용을 포함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제8.13조나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거래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어떠한 자본거래에 대하여도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3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GATS 제12조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이나 이에 대한 변경은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된다.

제8.14조
혜택의 부인

1. 당사국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서비스가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 내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입증할 경우, 해당 서비스의 공급

나.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의 경우로서, 부인하는 당사국이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9-다(송금)는 이 조에 적용된다.

1) 비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2) 비당사국의 인이 선박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하거나 사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다. 부인하는 당사국이,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

2.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법인이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또는

나. 그 법인이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8.15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협의

이 장의 이행이 당사국의 서비스 분야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분야에 관한 조치를 논의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취하여지는 어떠한 조치도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다. 다른 쪽 당사국은 특정 사안의 상황을 고려하고 조치를 취하려는 당사국에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8.16조
보조금

1. 당사국의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가 이 장에 따라 약속된 서비스무역에 중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이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 장에 따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약속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8.17조
양허표의 수정

1. 당사국은 약속의 발효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상의 어떠한 약속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가. 그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개월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보한다. 그리고

 나. 필요한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보상조정을 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상 이전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아니한 호혜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보장한다.

제8.18조
그 밖의 조항

부속서 8-가부터 8-라까지, 그리고 이 장에 따라 합의될 모든 장래의 법률 문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19조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

1. 이 협정의 발효 후,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네거티브 목록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을 비준할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반하여 서비스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장과 부속서들을 재협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그리고 각 당사국의 국내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양 당사국은 1년 이내에 협상을 종료할 것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한다.

3.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분야에 있어서 양 당사국 간 혜택의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협상을 행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국은 협상에서 이 협정의 자유화 약속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5장(분쟁 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8.20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활동을 말하며, 소위 " 비행전 운항정비" 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업적 주재란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아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가.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나.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이란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나. 상업적 주재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1)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2) 가호에 명시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

법인은,

1)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2)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지배**된다. 또는

3)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관계**에 있다.

독점 서비스 공급자란 당사국 영역 내의 관련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서 그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서비스 분야란 다음을 말한다.

가. 구체적 약속과 관련하여서는,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서비스의 하나 또는 그 이상 또는 모든 하위 분야, 또는

나. 그 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하위 분야 모두를 포함하는 그 서비스 분야 전체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비스는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운송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용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나.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6]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서비스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다.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또는

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운송권이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영역으로, 영역 내에서, 또는 영역 상공으로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운항하거나 여객, 화물 및 우편을 운송하는 정기적 및 비정기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운항지점, 취항항로, 운송대상의 형태, 운송능력, 부과운임 및 조건, 그리고 항공사의 수, 소유권 및 지배를 포함한 항공사의 지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다.

[6]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같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이 장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확장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다른 부분에까지 확장될 필요는 없다.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1. 적용범위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건전성 조치 예외[7], 환율 및 금융 안정성

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 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금융제도의 무결성과 안정성의 보장, 또는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8]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9]로 다음을 조건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1)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2)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의 경우, 그러한 조치는 필요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1년 이내 또는 조건들이 그 시행 또는 유지를 더 이상 정당화 할 수 없을 시 해제된다. 그리고

[7] 당사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그 당사국의 금융감독당국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감독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목적상 건전성 조치로 간주될 것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항에 맞게 취하여진다.

[8]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는 어느 특정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 또는 유지되지 아니한다.

[9]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3)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의 경우, 그러한 조치는 최혜국을 기초로 적용된다.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서비스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3. 투명성

가.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원활히 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나.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가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다.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을 한다.

1)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부속서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2)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10]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1)목에 기술된 대로 사전에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들의 의견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전자주소이든지 다른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3) 자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라.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수립한다.

바.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사.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관련 법과 규정에 명시된 시한 내에 신청자에 통보한다.

아.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80일[11]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자.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청거부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4.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11] 양 당사국은 180 일의 기간이 신청자가 관련 허가에 대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항은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5. 신금융서비스

각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이 새로운 법 또는 규정의 제정 또는 기존 법 또는 규정의 수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자국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그 인가는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12]

6. 데이터 처리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의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 가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건전성 고려를 기초로 개인 자료,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정보를 이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자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7. 구체적 예외

가.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12] 베트남의 경우, 합리적인 기간의 파일럿 테스트 후 그리고 베트남의 은행 및 금융제도의 발전 수준에 맞게 신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인가한다.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수행하면서 행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그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그 당사국의 보증하에, 또는 그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분쟁 해결

가. 제15장(분쟁해결)은 이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속서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나. 제15.8조(중재패널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이 부속서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패널과 중재인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 또는 관행에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가진 인이 된다.

9. 인정

가.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국 간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이 협정의 발효 시 또는 그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가호에 언급된 유형의 제3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들 간의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10. 금융서비스 위원회

가.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융서비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 및 금융부, 그리고

2)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또는 그 승계기관

나. 위원회는

1) 이 부속서의 이행을 감독한다.

2) 양 당사국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사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3) 이 부속서의 제8항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한다.

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11. 협의

가.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나. 이 항에 따른 협의에는 이 부속서의 제10항가호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12.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가.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2) 재보험 및 재재보험

3)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4)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나.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1)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2)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3) 금융리스

4)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5) 보증 및 약정

6)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가)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나) 외환

다)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마) 양도성 증권, 그리고

바)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7)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8) 자금중개업

9)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10)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11)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12)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1)목부터 11)목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금융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는 공급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존 및 새로운 상품과 관련되거나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상업적인 조건 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

부속서 8-나

통신

1. 적용범위

가. 이 부속서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나.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2)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전송 망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2. 접근 및 이용[13]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13] 베트남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국내 통신 기반시설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통신서비스 무역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 할 수 있다.

서비스를, 나호부터 바호까지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나.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1) 공중 통신 전송 망에 상호 연결되고,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2)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소유 또는 전용회선과 접속하는 것,[14] 그리고

3)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다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4] 베트남의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폐쇄 이용자 그룹 회원 간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도록 인가된 망들은 통신규제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직접 상호접속을 할 수 있다.

1)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2)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3)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상의 약속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

바. 마호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그러한 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사용에 대한 제한

2)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3)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4)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5) 사설 전용 또는 소유회선과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임차 또는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접속에 대한 제한, 또는

6) 통보, 등록 및 허가

3. 경쟁보장장치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 이 항에서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2)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3) 다른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또는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4. 허가 절차

가. 당사국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1)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2)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3)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나.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상호접속[15]

[15] 가호1)목부터 3)목까지에 대하여, 한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제공된다.

1)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일 것

2) 상호접속을 하고자 하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을 것

3)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일 것, 그리고

4)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될 것

나.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의 상호접속에 관한 (기술표준과 규격을 포함하는) 조건 및 요율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1) 상업적 협상, 또는

2)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통신규제기관에서 승인 또는 규정한 일련의 표준 조건 및 요율의 참조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3항에 규정된 대로 통신규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호 4)목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의 상호접속에 관한 절차를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6. 설비 병설[16]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음을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1)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설비기반 사업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 제공, 그리고

2) 1)목에 언급된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설비기반 사업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협력하여 실현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대안적 해결책의 모색 및 이행[17]

[16] 베트남의 경우, 설비 병설은 해저케이블 육양국과 국제 관문국 같은 필수 통신 기반시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필수 통신 기반시설은 권한 있는 규제 기관에 의하여 명시된다. 이 의무는 베트남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적절히 반영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적용된다. 이 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7] 그러한 해결책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에게 근처 건물에 장비를 두고 그러한 장비를 지배적 사업자의 망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허가

나. 추가적인 장비의 공간 확보 또는 가상 설비병설

다. 기존 공간 사용의 최적화, 그리고

라. 인접한 공간의 탐색

나.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가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물리적 설비 병설 또는 실현 가능하고 상업적 유효성이 있는 대안적 해결책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기술표준과 규격을 포함하는)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다. 각 당사국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물리적 설비 병설을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거나 가호에 언급된 실행가능한 그리고 상업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대안적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다.

7. 전용회선 서비스[18]

각 당사국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지 아니하는 한,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고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기술표준과 규격을 포함하는)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재판매[19]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9. 번호이동성[20]

[18] 베트남의 경우, 이 의무는 베트남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적절히 반영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적용된다. 한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3항에 규정된 대로 통신규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9] 베트남의 경우, 서비스공급자가 재판매 허가를 받으면 재판매에 나설 수 있다.

[20] 이 의무는 베트남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적절히 반영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적용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하여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10. 통신규제기관

가.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체제의 일부로서 통신규제기관을 설립 또는 유지한다.

나. 각 당사국은 자국이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통신규제기관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분리되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 각 당사국은 제5항에서 규정된 약속의 이행, 그리고 기구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포함하는 통신규제기관의 기능과 책임이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명시되도록 보장한다.

라. 각 당사국은 통신규제기관의 의사결정과 동 기관이 사용하는 절차가 모든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공정하도록 보장한다.

마.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행정, 중재 또는 사법 재판소 또는 당국 또는 행정적, 중재 및 사법적 절차에 따라 그 판정 또는 결정사항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절차가 통신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심을 실제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11.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2.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가.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 및 선로 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나.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다.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그 자체로 제8.4조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러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13. 통신 분쟁의 해결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 해결 기구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나. 각 당사국은 관련 통신규제기관의 최종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 중지 또는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심사가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4. 투명성

제14.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다음을 포함한 관련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가.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나. 그러한 전송 망 및 서비스와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다. 표준 관련 조치를 준비, 수정 및 채택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라. 공중 통신 전송 망에 단말장비 또는 그 밖의 장비 부착 시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마.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15.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16.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물리적) 설비 병설이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장소에서 장비를 설치, 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접근을 말한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란 다음과 같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가.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설비기반 사업자, 그리고

나.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 설비를 소유한 서비스 공급자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특정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의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또는 그 부분의 공급을 위한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동일한 유형(이동통신서비스)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에 동일한 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망이란 명시된 망 종단점 간에 통신을 허용하는 공중 통신 기반시설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란 당사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된 모든 통신 전송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정해진 지점 사이에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신,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이 포함될 수 있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법률 체제에 따라 통신 규제를 책임지는 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1. 적용범위

가. 이 부속서는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한 부속서 8-라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입국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나. 이 부속서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또는 거주나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출입국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협정에 따른 상품, 서비스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목적

이 부속서의 목적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양 당사국 간의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된 내용에 추가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3. 신청 절차

가. 출입국 절차를 위한 완전한 신청을 수령한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승인되었을 경우, 체류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완전한 출입국 절차 신청을 접수한 한쪽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체류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한 최종 결정 결과를 일시 입국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그의 고용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보한다.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당사국은 신청을 완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각 당사국은 최대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처분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라. 출입국 절차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수수료는,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4.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가.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각 범주에 대하여 체류 기간을 포함한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조건 및 제한을 명시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이동에 관한 구체적 약속을 부속서 8-라에 규정한다.

나. 각 당사국은 가호에 언급된 구체적 약속의 적용을 받는 자연인에게 부속서 8-라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른 입국 및 일시 체류를 보장한다. 다만, 그러한 자연인은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적용가능한 이민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한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연인이 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어떠한 면허 또는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5. 투명성

가.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 당사국으로의 입국, 일시 체류 또는 그 갱신을 위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구체적 약속과 관련한 신청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에 다른 방식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나.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접촉선 또는 그 밖의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수립한다.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둔다.

라.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 당사국은 일시 입국을 위한 신청의 처리와 관련된 현행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마.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모든 새로운 요건 및 절차의 도입 또는 그 당사국으로의 입국, 최초의 일시 체류, 또는 그에 따른 갱신 허가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효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가호에 언급된 기존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변경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6. 분쟁해결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15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1)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2) 영향을 받은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 행정 구제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재심 또는 불복청구 절차를 포함한 구제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관련된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호 2)목에 언급된 구제조치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가. 양 당사국은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연인의 이동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회합한다.

나. 위원회는,

1) 이 부속서에 따른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주는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 절차를 수립한다.

2) 이 부속서에 따른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을 고려한다.

3)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을 고려한다.

4)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양 당사국의 합의에 기반하여, 각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5) 상호 합의 하에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그 밖의 관심사항을 논의한다.

8. 협력

양 당사국은 사증 처리, 국경 안보, 그리고 자연인의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양 당사국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상호 합의된 협력 활동을 행할 것을 고려한다.

가. 비자 전자 처리 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조언 제공

나. 국경 안보 및 자연인의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경험, 규정 및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다.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사항과 같은 처리 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 포럼에서의 협력

9.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출입국 절차란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사증, 허가, 승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문서를 말한다. 그리고

자연인의 이동이란 영구적 거주의 의도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한쪽 당사국 영역 내로 일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제9장
투자

제1절
투자

제9.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9.9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1]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나. 제9.9조를 제외하고,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가 배타적으로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에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나,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수반된 모든 조건, 또는

 다. 특정 서비스 분야[2]가 부속서 8-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한쪽 당사국의 양허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8장(서비스무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4. 제3항다호에도 불구하고,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 그리고 제9.14조 및 제2절[3]은 그것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제8장(서비스무역)의 규정에 따라 한쪽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는 이 장에 기초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2] 이 장과 제8장(서비스무역) 간 관계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서비스가 1991년 7월 10일자의 MTN.GNS/W/120 문서에 포함된 WTO 서비스분야별분류표에 기재된 서비스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분류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분야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에 언급된 조에 대한 부속서 및 예외는 이 항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주재[4]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9.2조
제8장(서비스무역)과의 관계

이 장과 제8장(서비스무역)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제8장(서비스무역)이 우선한다.

제9.3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 및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9.4조
최혜국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영역 내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대우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기존의 모든 양자, 지역 또는 국제협정, 또는 모든 형태의 비당사국과의 경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에 따라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특혜적 대우, 그리고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모든 협정이나 약정에서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되는 기존의 또는 미래의 모든 특혜적 대우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이 자신이 당사자인 어떠한 미래의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그러한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로 인하여 부여되는 혜택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4] 상업적 주재는 제8장(서비스무역)에서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9.5조
대우의 기준[5]

1. 각 당사국은 국제관습법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이 조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이라는 개념은 국제관습법의 적용 가능한 규칙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심판 절차에서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은 적용대상투자의 물리적 안전에 관련된,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각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9.6조
손실에 대한 보상

1.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또는 반란, 폭동, 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모든 보상은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도록 한다.

제9.7조
수용 및 보상[6]

[5] 이 조는 부속서 9-가에 따라 해석된다.
[6] 이 조는 부속서 9-나에 따라 해석된다.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수용이나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이하 "수용" 이라 한다)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를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보상은

가. 과도한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 직전이나 수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때 중 적용가능한 시점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적절한 이자를 포함한다. 모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보상은 수용 당사국의 통화나,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지불된다.

4. 투자자가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 모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는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수용 당사국인 경우,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베트남 국내 법 및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은 토지 관련 모든 수용 조치는 보상의 목적으로 이를 지불할 때 상기 법 및 규정에 따른다. 그러한 보상은 보상액 관련 상기 법과 규정의 후속적 개정이 토지 시장가격의 일반적 경향을 따르는 경우 그러한 개정에 따른다.

6.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8조
송금[7]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9-다는 이 조에 적용된다.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액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하는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한쪽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바. 사회보장, 공적 퇴직 연금 또는 강제 저금 제도,

사. 피고용인의 퇴직금, 그리고

아. 과세

제9.9조
이행요건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지 아니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투자자의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관련시킬 것

라. 투자자의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자국 영역 내에서의 상품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마.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을 수출할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을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제1항은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을 제1항마호부터 제1항사호까지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외의 어떠한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조는 사적 당사자 간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있는 「무역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1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비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리고

나.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9.12조
비합치 조치

1.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에서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 정부, 또는

2) 지방정부[8]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에 대하여 부속서 I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의 그 개정

2.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후원 하에 체결된 그 밖의 조약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8]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5.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협상을 타결할 목적으로 이 협정의 발효 직후 부속서 I 및 II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

가.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부속서 I 및 II가 발효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전반적인 이익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 시점에서 양국의 투자에 관한 협정의 유보 목록에 있는 가장 발전된 수준의 자유화 약속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9]

제9.13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9.3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한쪽 당사국의 법과 규정[10]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한쪽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9.3조 및 제9.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게 그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모든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14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자국 투자자에 의한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이나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보장을 부여하고, 이 계약 또는 재정적 보장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하여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변제의 원칙에 따라 그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권리를 인정한다.[11]

2. 한쪽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그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국 또는 그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I과 II의 유보 목록에 대한 협상은 이 장 및 이 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경우, 이 요건은 적용대상투자가 베트남의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되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한다.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위변제 또는 이전되는 권리 또는 청구는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보다 크지 아니한다.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지 아니 한다.

제2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9.15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의 적용범위[12]

1. 이 절은 적용대상투자의 경영·영업·운영 또는 매각이나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한쪽 당사국이 제9.11조부터 제9.14조까지를 제외한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가 다음에 대하여 초래되었다는 청구와 관련하여,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에 적용된다.

가. 그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또는

나. 그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용대상투자

2. 한쪽 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연인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국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제9.16조
협의 및 교섭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및 분쟁당사국은 우선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협의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의사통보 제출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제9.17조
중재 청구 제기를 위한 의사 통보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서면 의사 통보(이하 "의사 통보"라 한다)를 청구 제기 전 최소 90일 전에 분쟁당사국에 전달한다. 의사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장의 규정과 그 밖의 모든 관련 규정

다. 쟁점이 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12] 투자는 이 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2.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또한 의사 통보와 함께 그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전달한다.

제9.18조
중재 청구 제기에 대한 선행 조건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9.1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동의할 것

나.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최소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다. 주장되는 위반에 대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제9.17조에 따라 요구되는 의사 통보를 전달하였을 것, 그리고

마.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그리고 청구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에 대한 지분에 손실 또는 손해를 위한 것인 경우, 그 기업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른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9.15조제1항에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포기할 것. 다만, 분쟁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른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시 가처분 절차는 예외로 한다.[13]

2. 이 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동의 및 포기는 분쟁당사자국에 전달되며, 중재 청구 제기에 포함된다.

3. 제1항마호에 따른 기업의 포기는 분쟁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지배권을 박탈한 경우에 한정하여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9.20조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동의는 무효화된다.

제9.19조
중재 청구 제기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시 가처분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될 수 있다.

1. 제9.18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다음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14]

가. 양 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나. 한쪽 당사국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모든 중재기관에 대하여, 또는 그 밖의 모든 중재규칙

2.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이 중재를 규율 한다.

3. 투자자가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제1항에 규정된 어떠한 중재 메커니즘에 그 분쟁을 제기하면, 그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4.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 요청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따른 중재 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통보가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1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어떠한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언급된 중재 통보나 중재 요청이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제9.20조
중재에 대한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동의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에 의한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그리고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9.15조에 언급된 분쟁을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

제 9.21조
중재인

1. 제9.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중재인은

가. 국제공법, 국제 무역 또는 국제투자 규칙, 또는 국제 무역 또는 국제 투자 협정에서 야기된 분쟁 해결에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독립적이며, 제휴 관계도 없고 지시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들은 중재인의 보수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일반적인 중재인 보수가 적용된다.

4. 제9.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 외의 중재판정부가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부터 90일 내에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의장 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9.22조
병합

1.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설치되며, 이 절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2.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9.19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복수의 청구가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그러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나. 중재판정부가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국은 임명권자가 중재판정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을 구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들의 성명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구하는 명령의 근거

4. 분쟁당사국은 명령을 구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들에게 요청 사본을 송달한다.

5. 사무총장은 요청의 접수 후 60일 내에 사무총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설치한다.

6. 중재판정부가 이 조에 따라 설치된 경우, 제9.19조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였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중재판정부에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구하는 명령의 근거

7. 제9.1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23조
중재의 수행

1. 중재판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서면 통보하고, 중재판정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 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2.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뉴욕협약의 당사자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중재를 개최하며, 다음에 따라 선택된다.

가. 중재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따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또는

나. 중재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경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3.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회의 및 심리를 위한 장소로 법적 중재지가 아닌 곳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하게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 대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성을 고려한다.

4. 관할권 또는 청구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쟁점이 선결적 항변으로 제기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본안 절차 전에 그 문제를 결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자신들의 견해 및 관찰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받는다. 중재판정부는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달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또는 권한 내에 있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경우, 그러한 취지의 판정을 내린다.

5. 중재판정부는, 정당한 경우, 항변을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수수료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청구 또는 항변이 경솔하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6.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지 아니하며, 제9.15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도 없다. 이 조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7.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 결정 및 판정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의 언어는 다음으로 한다.

가. 베트남이 분쟁당사국인 경우, 베트남어와 영어, 그리고

나. 한국이 분쟁당사국인 경우, 한국어와 영어

제9.24조
공동 해석

1. 이 협정의 규정[15]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이 절에 따른 판정은 그 해석에 합치한다.

2.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 또는 예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분쟁당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그 문제를 해석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 요청의 전달 후 60일 내에, 공동위원회는 중재판정부에 자신의 해석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그 해석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공동위원회가 60일 내에 해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9.25조
최종 판정

1.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모든 부속서를 포함한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또는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을 판정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국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지 아니한다.

제9.26조
판정의 최종성과 집행

1.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제3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 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3.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 판정의 집행을 구하지 아니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또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5. 이 절에 따라 설치된 투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6. 분쟁당사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7.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27조
문서의 송달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아래 장소로 송부된다.

가.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하노이 트란 푸 스트리트 60
베트남 법무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제3절
정의

제9.28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임명권자란 다음을 말한다.

가. 제9.19조제1항가호 및 나호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 조정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

나. 제9.19조제1항다호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의 경우,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 또는

다. 분쟁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인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후 설립·인수 또는 확장되고, 그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된[16],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1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경우 "허용된"의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서면으로 등록되거나 승인된" 것을 말한다.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란 제2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한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들이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분쟁당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국이란 제2절에 따라 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또는 분쟁당사국 중 하나를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파트너십·1인기업·합작투자 또는 협회 그리고 기업의 지점[17]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 및 규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점[18]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IMF)이 그 협정 및 그에 대한 모든 개정에 따라 지정한 모든 통화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이 투자의 특징을 지닌 것을 말한다.[19]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의 지분 참여, 그리고 선물과 옵션을 포함한 그로부터 파생한 권리

다. 채권, 회사채, 대부 및 그로부터 파생한 권리를 포함한 기업의 그 밖의 형태의 채무증서[20]

[1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법적 실체의 지점은 당사국의 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용어에서 지점이란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고 구성된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비당사국의 법적 실체의 지점은 당사국의 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9]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라.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그리고 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계약에 따른 그 밖의 사업 허가권[21]

마. 지식재산권, 그리고

바.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

그러나, **투자**는 오직 다음으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 한쪽 당사국 영역 내의 자연인 또는 기업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또는

아. 무역 금융과 같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의 확장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22]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23],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24]의 자연인 또는 한쪽 당사국의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 당사국이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당사국을 말한다.

수익이란 투자에 의하여 산출되거나 투자로부터 파생된 금액을 말하며, 특히 모든 이윤, 이자, 자본수익, 배당금, 로열티 또는 수수료가 해당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사무총장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2010년 개정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25]

[21] 사업 허가권은 건설운영양도 및 건설소유운영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기금을 포함할 수 있다.

[2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하고자 "시도하는" 투자자란, 적용 가능한 경우,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보 또는 승인 절차 개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비당사국의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2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하고자 "시도하는" 투자자란, 적용 가능한 경우,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보 또는 승인 절차 개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이해한다.

[2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2절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에 대한 투명성 규칙은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9-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9.5조 및 부속서 9-나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 인하여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9.5조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상 적용 가능한 규칙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및 이해를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9-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나. 제9.7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다. 제9.7조제1항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한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한다.

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한다.

나)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다)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26]

2) 예를 들어,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7] [28]

[2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 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혹은 투자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

[2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는 당사국이 자국의 헌법에 따라 규제 행위를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

[2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의 목록은 포괄적이지 아니하다. 이는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부속서 9-다

송금

1. 이 장 또는 제8장(서비스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경우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나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경제적 또는 금융적 혼란이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 내에 또는 상황이 더 이상 그러한 조치의 도입이나 유지를 정당화하지 아니할 때 점진적으로 폐지된다.[29]

나. 「국제통화기금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협정에 합치한다.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마.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바.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그리고,

사. 부속서 I, 부속서 II[30] 및 부속서 8-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유보목록에 따라, 제9.3조 및 제8.2조(내국민 대우)와 제9.4조 및 제8.3조(최혜국 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31]

3. 이 장 또는 제8장(서비스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협정에 합치되는 환율 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당사국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는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넘어 연장될 수 있다.
[30] 이 호는 양 당사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의 유보목록이 발효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3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목록에 따라 제9.3조 및 제9.4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8장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부속서 8-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유보목록에 따라 제8.2조 및 제8.3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각각 적용된다.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0.1조
일반 규정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리고, 양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 증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관한 양 당사국 간 협력 제고 및 세계적으로 보다 폭넓은 전자상거래의 사용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0.2조
관세

1.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세계무역기구 하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협정에 합치되게, 전자적 전송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된 내용물에 대하여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전자인증, 전자서명 및 디지털 인증서

1. 각 당사국은 전자인증을 위한 다음의 법령을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전자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기술 및 실행 모델을 상호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전자거래가 전자인증에 대한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허용하는 법령, 그리고

다. 인증 기술 및 실행 모델의 인정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법령

2.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당사국이 국제적으로 수용된 기준에 근거하여 발행하거나 인정한 디지털 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업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인증서의 상호 운용성을 장려한다.

제10.4조
국내 규제의 틀

각 당사국은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5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소비자를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자국의 관련 국내 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그 밖의 형태의 상거래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한다.[1]

제10.6조
개인정보 보호

1.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전자상거래상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

[1]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이나 규정을 제정하거나 또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는 날 전에는, 이 항을 적용할 의무를 지니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국제 표준 및 관련 국제 기구의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이전되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제10.7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2]

3.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종이 없는 무역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8조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

1.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할 수 있는 연구 및 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유지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나. 개인정보 및 온라인 소비자의 보호와 사기 사건의 신속한 조사 및 해결 촉진 등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의 보안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사용하는 무역행정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사용하도록 장려

[2] 베트남의 경우, 이 의무는 가능한 경우 각 분야에 대한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라. 전자상거래의 법적 틀을 이행하는 데 있어 양 당사국 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모색, 그리고

마. 전자상거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

2.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겪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국경을 넘어 이전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권한 있는 당국과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협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10.9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디지털 인증서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참가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행되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그 참가자와 달리 관련된 전자 문서 또는 파일을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데이터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제11장
경쟁

제11.1조
목적

양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관계에서 왜곡되지 아니한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 경쟁법[1] 및 정책의 이행, 그리고 경쟁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양해한다.

제11.2조
법 집행 원칙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증진하는 포괄적인 경쟁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며,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당사국의 경쟁법 집행은 투명성, 시의적절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

제11.3조
이행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경쟁법은 다음을 효과적으로 다룬다.

가. 시장 내 신규 진입 방해, 경쟁의 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이나 효과로서 가지는 기업 간 합의, 기업 단체의 결정 및 동조적 관행

나.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또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 그리고

다. 기업의 흡수합병, 기업의 신설합병, 기업의 영업양수, 기업 간 합작투자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 결합을 구성하는 기업의 행위인 경제적 결합

1. 양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 집행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법과 규정에 규정된 면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정 경쟁을 다루고 있는 자국 법과 규정을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에 규정된 모든 면제는 투명하고 공공 정책이나 공익에 근거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모든 공식적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관련 사실의 조사 결과와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논거 및 법률적 분석을 기술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 결정이 관련 당사자에 통보되도록 더욱 보장한다. 그 결정본은 자국 국내 법과 규정에 의하여 대중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영업비밀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 정책과 관행에 관한 공공 정보를 요청 당사국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5. 각 당사국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인에게 심리에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에게 자국 경쟁법에 따라 행정 재심과 사법적 재심을 통하여 그 제재 또는 구제에 대한 이의제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1.4조
경쟁법의 적용

1.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들은, 국가 소유이든 민간 소유이든 그 소유권에 관계없이, 제11.2조에 언급된 경쟁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그러한 규칙의 적용은 그 기업에게 맡겨진 특정한 공공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가 독점 분야 및 영역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자국 경쟁법에 근거하여 어떠한 반경쟁적 행위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11.5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각국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증진시키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국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협력하는 것에 합의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인지했을 때,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적절한 때에 통보한다. 다만, 그 통보는 각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자국의 중요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때에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관련 경쟁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완전한 자유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히 그리고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호의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

제11.6조
정보의 교환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는 비밀 정보가 아니어야 한다.

제11.7조
비밀 유지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경쟁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제공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2. 한쪽 당사국 경쟁당국은 정보를 제공한 경쟁당국이 승인하지 아니한 그 어떤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협의

1. 양 당사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그리고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을 개발, 유지, 및 집행할 각 당사국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그러한 요청 시, 각 당사국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11.9조
기술 지원

양 당사국은 경쟁 분야에서 양국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다음의 기술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가. 경쟁법 및 정책의 증진과 집행에 관련된 경험의 교환

나.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교환

다. 훈련 목적의 공무원 교환

라. 경쟁법 및 정책에 관한 자문가 및 전문가 교환

마. 강연자, 자문가, 또는 참석자로서의 공무원의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한 훈련 과정 참여

바. 경쟁 주창 프로그램에 대한 공무원의 참여

사. 경쟁 주창 및 경쟁 문화 증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기술협력

제11.10조
분쟁해결

제15장(분쟁해결)의 규정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1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베트남의 경우, 경쟁청 및 경쟁위원회,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각의 승계기관, 그리고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경쟁법」과 그 이행 규정

나.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그리고

다. 이 협정 발효 후 상기 언급된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2.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특히 기술 혁신, 기술 이전과 보급 및 무역과 관련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 제고

나.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및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법 제도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창출, 활용, 보호 및 집행을 통하여 무역과 투자에의 장애를 감소

다. 지식재산 소유자의 권리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에 대한 사용자 및 공동체의 정당한 이익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 그리고

라.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교역을 제거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집행조치와 절차가 그 자체로 적법한 교역에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

제12.2조
일반 원칙

1. 각 당사국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부여하고, 그러한 권리의 집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2.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식재산권의 보호[1]와 향유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1] 제2항의 목적상, "보호"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가용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그리고

그러한 권리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혜택과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2]에게 부여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국의 법 제도와 관행 내에서 자유로이 결정한다.

4. 각 당사국은 개발 및 기술 목표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 제도의 내재된 공공정책 목표를 인식한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2.3조
국제 협정의 확인

1.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른 지식재산 협정 하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협정 하에서 양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 권리와 의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의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가.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라 한다) 저작권 조약」(1996년), 그리고

나. 「WIPO 실연·음반 조약」(1996년)

한쪽 당사국이 위의 협정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으로부터 그러한 협정의 가입과 이행의 지원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제12.8조에서 규정하는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신호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2] 이 장의 목적상, "국민"이라는 용어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12.4조
더 광범위한 보호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하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5조
상표

상표 보호

1.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표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하지만,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도형적인 요소나 상품의 형상 또는 그의 포장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표권의 예외

3.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명상표

4.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에서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967년)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3]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준용된다. 다만,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가.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표와 선행 유명상표와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나. 그 상표의 사용이 오인을 초래하거나, 그 상표와 선행 유명상표의 소유자와의 관계를 기만하는 경우, 또는

다. 그 상표의 사용이 선행 유명상표의 명성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유명상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조치를 준용하도록 권장된다.

상표의 등록과 출원

7.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인은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 등록 제도를 규정한다.

8. 각 당사국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9.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과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3] 어떤 표지가 유명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상, 어떤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대중의 분야 이상으로 확장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6조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부정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성격의 모든 행위

나.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신용을 해하게 하는 성격의 거래상의 허위 주장

다. 상품의 성질, 제조방법, 특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수량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거래상의 표시 또는 주장, 그리고

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유발할 목적과 같이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명시된 목적으로 각 당사국 내의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 취득 또는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에 따른 미공개 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적절한 구제책을 수립한다. 특히, 각 당사국은 자신의 사업 이익이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침해된다고 간주하는 어떤 사람도 소송을 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의 중단 또는 금지, 그러한 행위를 구성하는 상품의 폐기, 그러한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의 제거, 또는 그러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
특허

1. 각 당사국은 특허가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특허 대상에서 다음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다.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 및 동물, 그리고 비생물적이고 미생물적인 방법 외에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본질적으로 생물적인 방법

3.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가. 공지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4], 그리고

나.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우선심사

[4] 양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호에 포함된 특허 대상의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 예외의 확대를 검토하는 데 동의한다.

5.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조건으로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 출원의 공개 이후에 출원인 외의 사람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 또는

나. 특허 출원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를 위한 준비 중인 경우

제12.8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방식과 형태를 불문하고, 그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을 방송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5]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들에게 보상금[6]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권리의 집중관리

3. 양 당사국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집중관리 단체들에 위임된 권리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사용에 비례하여 징수된 보상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우수한 관리 관행의 문맥에서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4.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 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에 콘텐츠의 더욱

[5] "사람"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양해된다.

[6] 보상은 사용자와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간에 합의하거나, 또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달리 결정된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그들 각각의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보호

5. 각 당사국은 다음 행위에 대하여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 또는 형사 조치를 제공한다.

가.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나. 암호화된 위성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거나, 또는 재배포하는 행위

제한과 예외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서 언급된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특별한 경우로 국한한다.

제12.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일반 의무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특히 동 협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 규정된 지식재산권의 집행 규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저작자 또는 소유권자의 추정

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민사, 형사 및 적용 가능한 경우 행정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3.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이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국내 법과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국의 사법 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5.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로 설정된다.[7]

6.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 행위와 관련된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 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8]

7.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와 관련하여, 사법당국이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7] 어느 당사국도 제5항을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승인이나 동의 하에 행동한 제3자에 대한 침해 소송에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8] 당사국은 이 의무를 잠정조치를 통하여 완수할 수 있다.

8.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민사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국의 사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잠정조치

9.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사법당국은 또한, 적절한 경우, 특히 지연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훼손될 입증할 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방 절차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10.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하여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1. 각 당사국은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9] 이 반출되어 자유로이 유통되는 것을 권한 있는 당국이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모든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상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견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이 의심 상품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12. 각 당사국은, 프라이버시 또는 비밀정보에 관한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유치 또는 압류한 경우, 지원을 요청한 권리자에게 그 권리자가 구제를 추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상품의 물품 명세 및 수량, 탁송인,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알려진 경우 그 상품의 원산지국과 그 상품의 제조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9] 이 항의 목적상, "위조된 상표 상품"과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51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3.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 또는 위조로 몰수된 상품은 권리자에게 어떤 손해도 가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폐기되거나 상거래에서 제거되도록 규정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형사 절차와 구제

14.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범죄의 경중에 상응하여 적용되는 처벌의 수준에 합치되게, 이용 가능한 구제는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징역형 및/또는 벌금형을 포함한다.

인터넷 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

15. 각 당사국은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10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 제도의 효율과 발전을 유익하고 균형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 당사국은, 가능하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요청한 당사국의 국내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획득, 보호, 활용 및 집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당사국에 제공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 제도, 행정, 등록 및 보호에 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또한, 각국의 지식재산 부서를 통하여, 다음의 쟁점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가. 지식재산권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역량 강화

나.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지식재산 행정 및 등록 시스템

다. 지식재산권 교육 및 대중 인식

라. 지식재산 상업화 및 기술 이전

마. 품질관리 절차의 개선,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영역

5.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행정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그 밖의 대상의 출원과 등록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 제공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추가로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지식재산 쟁점에 대한 대화를 증진하기로 또한 합의한다.

가. 이 조항에 따른 협력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접촉선 지정, 그리고

나. 상대국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이해관계자 간의 교류 권장

7. 협력 활동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재원의 가용성의 제한을 받아 수행된다.

제12.1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은 이 장 및/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지식재산 분류를 일컫는다.

제13장
경제협력

제13.1조
기본원칙

1. 양 당사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

2. 경제협력의 이행을 증진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각 정부 간의 협력을 수행하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상대방이 양 당사국의 정부가 아닌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양 당사국이 상호 관심을 가지는 협력 분야에 대한 양 당사국의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양 당사국은 적절한 형태의 활동으로 협력할 것이다.

3. 양 당사국 간에 진행 중인 경제협력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 외의 틀에 따른 기존의 경제협력을 존중하고 장려한다.

4.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규정된 경제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규정들을 인정한다.

제13.2조
협력 분야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한다.

2. 산업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

 나. 철강 및 금속

 다. 석유화학제품

라. 전자제품

마. 기계

바. 의류, 섬유 및 신발

사. 유통 및 물류,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

3. 농업, 수산업 및 임업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축산 및 작물 생산

나. 원예

다.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의 투자여건 개선

라.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른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 투자자의 수요 충족

마. 수산 자원 관리

바. 산림 관리

사. 농업 기반 및 식품 가공,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

4. 무역 규칙 및 절차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나. 통관절차

다. 원산지 규정 및 그 밖의 관세양허 이행의 측면

라. 지식재산,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

5. 그 밖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

나. 통계

다. 공정 경쟁

라. 사회기반시설

마. 투자

바. 문화 관련 서비스,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

제13.3조
협력 형태

경제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기술 지원

나. 인적자원 훈련

다. 의견 및 정보 교환

라. 전문가 교류

마. 세미나 및 워크샵

바. 제도의 설계 및 개선

사. 분야별 종합추진계획 수립

아. 발전전략 수립

자. 모범사례 공유

차. 기초연구

카. 공동연구 및 개발

타. 공동의 무역 및 투자 증진 활동

파. 모델 및 기술 이전, 그리고

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형태

제13.4조
이행

1. 협력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위하여, 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의 형태 및 기능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3.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기간에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그러한 사업의 이행은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감독 및 검토된다.

4. 양 당사국은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협력 분야의 이행을 위한 자금조달은 이행약정에 상세하게 규정된다.

제13.5조
경제협력 자원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경제협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3.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조달은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된다.

부속서 13-가

문화 관련 서비스 협력

1. 협력이 양 당사국 간의 이해 증진 및 양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시청각, 관광, 엔터테인먼트(극장, 라이브 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를 포함한다), 문화유산,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관련 산업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의 국내정책, 표준 기술과 관련 법 및 규정과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 및 경험 교환을 통해서도 촉진된다.

제14장
투명성

제14.1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국내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국내 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1]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공식 저널[2]에 그러한 법 및 규정을 공표하고 추가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들의 배포를 장려한다.

4. 제2항가호에 따라 공표되고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제안하는 법안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3] 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제안된 법 및 규정을 공중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전에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1] 이 항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란, 베트남의 경우, 국가주석 명령 및 결정, 정부령, 총리 결정 및 장관 회람을 말하며, 한국의 경우,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이 항의 목적상, "단일의 공식 저널"이란, 베트남의 경우, 관보를 말한다.

[3] 이 항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란, 베트남의 경우, 정부령, 총리 결정 및 장관 회람을 말하며, 한국의 경우,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제14.2조
정보의 제공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제14.1조에 언급된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제14.3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국내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적용 가능한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는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를 것

제14.4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 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국내 법 및 규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국내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 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제2항나호에 언급된 모든 결정이 이행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14.5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15장
분쟁해결

제15.1조
목 적

1. 이 장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회피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이 장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15.2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1장(경쟁) 및 제13장(경제협력), 제8.19조(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 및 부속서 3-나(특정 상품의 취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3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가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15.4조
협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15.2 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고,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협의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응답한다.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의로 협의를 개시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양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5. 협의가 개시되면 양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6. 이 조항에 따른 협의는 비밀이며 이 협정 또는 그 밖의 절차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5.5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이들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중재패널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계속될 수 있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이 협정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5.6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제15.4조에 따라 협의 요청을 한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서면으로 피소 당사국에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15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2.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은 피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한다.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 그리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적시한다.

제15.7조
중재패널의 위임사항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 설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15.6조에 따른 중재패널 설치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이 협정과 그 조치의 합치성에 관하여 이유와 함께 판정을 내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한 그러한 판정의 이유를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발급하는 것"

제15.8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2. 각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관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자국의 국민이어도 무방하다)을 한 명씩 임명하고, 중재패널의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인 역할을 할 최고 세 명의 후보자를 제안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관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제안된 후보자를 고려하여, 중재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제3의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4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7일 이내 회합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제안된 후보자 명부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제3의 중재인 후보자는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며, 어느 당사국에도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으며,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도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자격으로도 그 분쟁을 다루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4.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는 날이다.

5. 모든 중재인은 이 협정과 관련된 법, 국제무역 또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각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분쟁과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기관과 연계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부속서 15-나를 준수한다.

6. 한쪽 당사국이 중재인이 부속서 15-나의 요건들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합의 하에 그 중재인을 제7항에 따라 교체한다.

7.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후임자는 15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임명 방식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선정된다. 후임자는 원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날부터 정지된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 재개된다.

제15.9조
중재패널 절차

1. 중재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초청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어도 하나의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절차상 발표, 진술 또는 반박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중재패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 또는 서면입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주장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4. 중재패널은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과 협의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중재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포함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제17.1조(공동위원회)제4항에 따라 채택한 해석 및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을 선의로 수행하며 자국의 의무에 대한 우회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을 해석한다.

6.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포함하여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보고서를 포함하여 과반수 투표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모든 관련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정 측면에 관한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에 모든 획득된 조언이나 의견의 사본 및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8.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자료는 비밀로 취급된다.

9. 제8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은 분쟁에 관한 자국의 견해에 대하여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정보와 서면입장은 비밀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된 정보 또는 서면입장을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비밀이 아닌 정보 또는 서면입장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10.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재패널에 제공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11.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의 입장 및/또는 주장을 요약하는 서술적 부분과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을 모두 포함한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어떠한 권고도 이 협정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12. 중재패널 절차의 장소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장소는 양 당사국의 수도가 교대로 되며 중재패널절차의 첫 번째 회의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제15.10조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러하게 합의한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자신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지된 중재패널 절차는 재개된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중재패널의 업무와 관련된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재패널 업무의 정지의 각각의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권한은 실효된다. 이 실효는 제소 당사국이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되기 전 언제든지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공동으로 통지함으로써 중재패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판정을 내리기 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양 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다.

제15.11조
잠정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중재패널이 내린 모든 조사결과에 대한 기본 근거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한 서술적 부분,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권고를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나.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2.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 하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잠정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잠정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15.12조
최종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잠정보고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2.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 하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5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중재패널은 제15.11조제1항 및 제15.12조제1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내에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제15.13조
최종보고서의 이행

1.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그 불합치를 즉시, 또는 그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거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으며, 동 중재패널은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4. 피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행한 이행 조치를 양 당사국이 합의한 또는 제3항에 따라 원 중재패널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제소 당사국에 통보한다. 피소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제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14조
불이행,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이행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이행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또는 제15.13조제4항에 따라 사안이 회부된 중재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합치를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러하게 요청받는 경우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교섭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언제든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소 당사국에 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정지의 통보로부터 30일 후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그 정지 통보는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보상과 제2항에 언급된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다. 보상과 정지 모두 중재패널 보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선호되지 아니한다. 정지는 불합치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때까지만 적용된다.

4.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 제소 당사국은 제15.12조에 언급된 중재패널 보고서가 이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확인한 그 동일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그러한 정지에 대한 통보는 그 기초가 되는 근거를 적시한다. 그리고

 다.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5. 피소 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있어서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사안을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6. 이 조 또는 제15.13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 또는 제15.13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은 제15.8조에 따라 임명된다. 이 조 또는 제15.13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은 그 사안이 중재패널에 회부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상기 언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양 당사국의 동의 하에 최대 30일까지 중재패널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15.15조
절차 규칙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중재절차 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과 협의하여, 이 부속서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이 장과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모든 기한 또는 그 밖의 중재패널 절차 규칙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또한 언제라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15.16조
경비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비용과 자국의 경비 및 법률 비용을 부담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의장의 비용과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5.17조
부속서

부속서 15-가와 15-나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5.18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중재패널이란 제15.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중재인이란 제15.6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후보자란 제15.8조에 따라 제3의 중재인으로 임명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15.6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15.2조에 언급된 대로 이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중재패널 절차를 말한다.

부속서 15-가

중재절차 규칙

행정 운영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절차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중재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통보

2.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에 의하여 전달되는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신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전송된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자국의 각 서면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4. 모든 통보는 작성되어 베트남의 산업무역부, 그리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전달된다.

5.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

6. 문서 전달[1] 마감일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최초 입장

7.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30일 이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의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목적상 전달일이란 제출된 문서가 목적지에 도달한 날짜이다.

중재패널의 운영

8. 중재패널의 의장은 중재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 및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0. 중재인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중재인의 보조인의 참석을 허락할 수 있다.

11. 모든 결정 및 판정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지 아니한다.

12. 이 장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3. 중재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이 장에 규정된 기한을 수정하거나, 절차에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수정 또는 조정에 대한 이유를 필요한 기한 또는 조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

1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비용은 통상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기준에 따를 것이다.

심리

1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한 한번의 심리가 개최된다. 의장은 양 당사국 및 중재패널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 중재패널의 의장은 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부속서 제20항에 따라 양 당사국이 심리를 공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6.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17.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18. 당사국의 대표자, 당사국의 자문인, 전문가, 행정 인력, 통역사, 번역사, 법원서기, 그리고 중재인의 보조인은 심리가 공중에게 공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중재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대표자와 자문인만이 중재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19. 각 당사국은 심리일의 최소 5일 전에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이나 발언을 할 인과 심리에 참석할 그 당사국의 대표자, 자문인, 통역사 및 번역사의 명부를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20. 중재패널의 심리는 공중에게 비공개된다. 양 당사국은 심리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1. 중재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반박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답변,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22.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다.

23. 중재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속기록 사본을 양 당사국에 전달한다. 양 당사국은 속기록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중재패널은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4. 각 당사국은 심리일부터 10일 이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응답하는 보충적 서면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문

25. 중재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질문이 제시된 당사국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질문서 사본을 보낸다.

26. 중재패널이 질문서를 제시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중재패널에 모든 서면 답변서 사본을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진다.

일방적 의사소통

27. 중재패널이 고려 중인 사안에 관하여 중재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아니한다.

28. 어떠한 중재인도 나머지 중재인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적 조언 요청에 의한 기한 정지

29.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가가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전문가에게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추가 기간이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의 절반을 넘지 아니한다.

30. 전문가의 서면 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보고서가 중재패널에게 전달되는 날까지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한은 정지된다.

외부조언자의 입장

31.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3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입장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아니하여야 하고, 중재패널이 고려 중인 사실적 및 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32. 제31항에 언급된 입장은 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활동 성격 및 자금조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입장을 제출하는 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의 국적 또는 설립 장소 및 그 인이 중재절차에서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한다. 그 서면입장은 제34항에 따른 공동 작업언어로 작성된다.

33. 중재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31항 및 제32항에 부합하는 모든 입장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 중재패널은 그러한 입장에서 제기된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에 따라 중재패널이 획득한 모든 입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된다.

번역 및 통역

34. 제15.4조에 언급된 협의 동안, 그리고 제8항에서 언급된 회합 이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절차의 공동 작업언어는 영어이다. 당사국이 절차 중에 통역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준비 및 비용 부담은 그 당사국이 한다.

35. 이 장에 따라 절차의 사용을 위하여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어떠한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그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기한 계산

36.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계산되고,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이 된다.

37. 제6항의 이행을 이유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동일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러한 접수에 의존하여 기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러한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부터 기산된다.

그 밖의 절차

38. 제15.13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5.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안을 회부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의 서면입장을 사안의 회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달하고, 피소 당사국은 최초로 서면입장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39. 제15.13조 및 제15.14조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중재패널 절차의 기한에 따라 각 당사국에 같은 수의 서면입장 작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중재패널은 반박 서면입장을 포함한 추가 서면입장 전달 기한을 정한다.

40.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는 제15.13조 및 제15.14조에 따라 정하여진 절차에 또한 적용 가능하다.

정의

41. 이 장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하거나 당사국을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중재인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중재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대표자란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임명한 모든 인을 말한다.

부속서 15-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절차에 대한 책임

1. 모든 후보자와 중재인은 분쟁해결 절차의 완전 무결성과 공평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중재인들은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에 확립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개 의무

2. 제15.8조에 따라 중재인으로서 자신의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3. 일단 선정되면, 중재인은 제2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중재인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중재인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공개한다.

의무

4. 선정되는 경우, 중재인은 절차의 과정 내내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5. 중재인은 모든 임무를 공정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6. 중재인은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7. 중재인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항, 제16항 및 제17항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8. 중재인은 부속서 15-가의 제27항 및 제28항에 따라 절차에 관한 일방적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한다.

중재패널 구성원의 독립성 및 공평성

9.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평하다. 중재인은 공평한 태도로 행동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0.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1. 중재인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재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중재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2. 중재인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자신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3. 중재인은 자신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전임 중재인의 의무

14. 모든 전임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중재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을 도출하였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하여야 한다.

비밀 유지

15.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16. 중재인은 공표에 앞서 중재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7.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중재패널의 심의 또는 어느 중재인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의

18. 이 장의 목적상,

직원이란, 중재인에 대하여, 보조인을 제외하고 그 중재인의 지시와 통제 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제16장
예외

제16.1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그리고 제7장(무역구제)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8장(서비스무역) 및 제9장(투자)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각주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16.2조
안보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대 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3) 통신, 전력 및 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공 사회기반시설을 불능화 또는 기능 저하를 시키고자 하는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치, 또는

4) 국내적 비상시, 또는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하여지는 조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공동위원회는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와 그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제16.3조
과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베트남과 한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16.1조제2항은 과세조치에 적용된다.[1]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그 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 내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5. 제9.8조(송금)제4항아호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6. 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9-나(수용)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세금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더 적다. 그리고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1] 이 항의 목적상, 제16.1조제2항의 과세조치에의 적용은 GATS 제14조라항 및 마항을 지칭한다.

7. 가. 이 호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9.7조(수용 및 보상)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9.7조(수용 및 보상)를 원용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제9.17조(중재 청구 제기를 위한 의사 통보)에 따른 의사 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 요청을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그 요청은 의사 통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9.19조(중재 청구 제기)제1항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이 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베트남의 경우, 재무부 조세총국장, 그리고

2)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각각의 승계인

8. 이 조의 목적상

가. **조세협약**이란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그리고

나. 세금 및 과세조치는 제1.5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관세, 그리고 그 정의 중 예외 나호, 다호, 라호 및 마호에 기재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4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제1절
제도규정

제17.1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급 공무원, 또는 그들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의제를 정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점검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

 다.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마.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4. 공동위원회는

가.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이 협정의 개정을 양 당사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라. 권고할 수 있다.

5.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공동위원회,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제17.2조
공동위원회의 절차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2. 공동위원회의 회합은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7.3조
위원회 및 작업반

1.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수 있다.

2.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의 구성, 회합의 빈도 및 기능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이 협정과 합치하게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은 자신의 회합에 충분히 앞서,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그들은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4.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을 해산할 수 있다.

제2절
최종규정

제17.4조
접촉선

1. 이 협정이 적용되는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 접촉선을 수립한다.

가. 베트남의 경우, 산업무역부 또는 그 승계 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 기관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계된 모든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적시하고 요청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의적절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

제17.5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7.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제17.5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17.7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7.8조
발효

1. 이 협정의 발효는 각 당사국의 필요한 국내적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17.9조
기간

1.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폐기 의사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할 수 있다.

3.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7.10조
정본

이 협정은 베트남어본, 한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 년 5 월 5 일 하노이 에서 작성하였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